

의안번호	2204616
의 퇴 인	임이자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2.
추 계 번호	24B4255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의2 신설(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)	환경부장관은 <u>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</u>(제1항)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<u>재생원료 생산을 검·인증할 수 있음</u>(제2항)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·인증을 위하여 <u>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</u>(제3항)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<u>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</u>(제4항) 환경부장관은 제2항내지 제5항에 따른 <u>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</u>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·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의2 신설(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(안 제31조의2 신설)

□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‘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·사용 검인증 제도’를 도입하는 것임

○ 환경부는 동 제도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중¹⁾

[표 1]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·사용 검인증 제도

배경	• EU의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의무 도입* 등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필요 * EU 新 배터리지침: ‘31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(코발트 16%, 리튬 6%, 니켈 6% 등)							
개요	•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추출한 원료에 대한 재생원료 인증(생산인증) 및 신제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 인증(사용인증) 추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생산인증</th><th>+</th><th>사용인증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• (신청) 배터리 재활용기업 → 환경부 • (내용) 재활용 배터리를 파·분쇄하여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 </td><td></td><td> • (기준) 환경부 설정 • (신청) 배터리 제조기업 → 산업부 • (내용)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추적하여 신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생산인증	+	사용인증	• (신청) 배터리 재활용기업 → 환경부 • (내용) 재활용 배터리를 파·분쇄하여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		• (기준) 환경부 설정 • (신청) 배터리 제조기업 → 산업부 • (내용)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추적하여 신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
생산인증	+	사용인증						
• (신청) 배터리 재활용기업 → 환경부 • (내용) 재활용 배터리를 파·분쇄하여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		• (기준) 환경부 설정 • (신청) 배터리 제조기업 → 산업부 • (내용)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추적하여 신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						
추진현황	•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* 추진 중(’24.7~12) * 폐배터리 재활용기업과 협업을 통해 재생원료 인증방법(안)의 신뢰성 검증 및 개선점 도출							
향후계획	• 재생원료 생산인증 제도 마련(’25) * 추후 산업부 협의를 통해 신제품 배터리의 사용 의무 도입 추진							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

□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·사용 검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, 제도 추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재생원료 검·인증 기준서 마련
-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 운영시스템 구축
- 검인증기관 지정·운영

1)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임
 - 과제명: 전기차 배터리의 재생원료 인증체계 마련
 - 용역 기간: (’23.4.12)
 - 수행기관: 리셋컴퍼니주식회사
 - 계약금액: 8,800만원

-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 설정 등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·사용 검인증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,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